

안전성검사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처리기간 45일
제 조 업 자	회사명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전자우편	
	사업장 소재지	전화번호/팩스번호	
안전성검사 대상 전기용품	제품명	수량 또는 크기	
	모델명(해당 시)	제품정격	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3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성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안전성검사기관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제품설명서 2.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 3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제품정보 4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표시 견본	수수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명	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	(서명 또는 인)
--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